

최근에는 농촌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정주보다 5도2촌형의 일시 거주나 이(二)지역 거주를 위한 체류형 농원 조성과 도농교류 활동이 강조된다. 주택도 신규로 조성하기보다 빈집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2007년에는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주 등과 지역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정주자나 체재자의 증가를 통해 농산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기초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마련하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농산어촌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 교부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귀농·귀촌을 겨냥한 임대주택과 우량전원주택 지원

가
(町) (村)
(町營住) (村營住)
1990
가
가
가
1/2
가
1/2
2005
가
가
1998
가

300㎡ (30%, 50%, 3
)
가
가

전원주거단지 침체로 농촌 정주보다 체류 지원 가

1990
가
가
1/2
(岡山縣)
(吉備高原都市)가
(Garden City)
가
가
3
1980
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iseong@krei.re.kr